

# 2020년도 제1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2. 6.(목요일), 10:3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김경숙(분과위원장), 박재화, 박정인,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1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b>&lt;의결안건&gt;</b>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3호 : 접속차단 된 해외 사이트의 대체 사이트 URL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정현순 전문위원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55건(안건번호 제2020-5322호~5437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5322호~5331호, 제2020-5336호~5343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각각 영상(영화),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5332호는 카페 이용자가 웹툰 복제물을 스크랩하여 다시 게시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0-5333호, 5334호는 공개 밴드에서 영상(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5335호는 ●◎◇ ◇♠♣ 게임기에 커스텀 펌웨어를 설치하는 방법과 설치파일의 링크를 공유한 사안임.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안건번호 제2020-5344호~5346호는 ◇♠♣☞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자막파일을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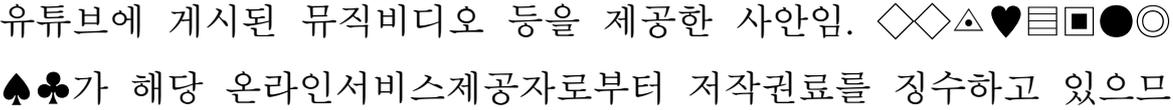
안건번호 제2020-5347호, 5348호~5350호, 5368호~5370호, 5379호~5381

호, 5382호는 블로그에서 영상(방송), 음악, 출판 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5351호~5367호는 웹하드 사이트와 포털 사이트에서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 또는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5371호~5374호는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 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5375호~5378호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일본 만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5383호는 가 다시보기 기능으로 유튜브에 게시된 뮤직비디오 등을 제공한 사안임. 가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를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전 게시물 87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42건(안전번호 제2020-257호, 259호, 269호, 277호, 280호, 284호~287호, 293호~295호, 297호~303호, 315호, 319호, 325호, 328호, 333호~335호, 362호,

381호, 394호~397호, 410호~411호, 417호, 422호~423호, 427호~429호, 431호, 443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9개 안건은 가결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33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4개 안건은 부결함(4개 안건은 부결 사유가 중복됨).
  
- o 제3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27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및 새롭게 접속차단 조치한 사이트 44개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등 모두 484개의 URL 정보에 대하여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27개 및 새롭게 접속차단 조치한 사이트 44개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등 모두 484개의 URL 정보는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0-1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회의록 6쪽의 저작물명, 저작권사, 7쪽의 저작물명, 8쪽의 저작물명, OSP명, 카테고리명, 게시물 제목, 9쪽의 게시물 내용, 10쪽의 게시물 내용과 관련된 단어, 방송 채널, 11쪽의 게시물 내용과 관련된 단어, 12쪽의 OSP명, 저작물명, 잡지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 민원 내용과 관련 있는 정보로 비식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A 위원 : 게시물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해당 내용은 비공개해야 함.
- C 위원 : 민원 내용에 비공개하여 공개하는 의견에 동의함.
- D 위원 : 같은 생각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저작물명, 저작권사, OSP명, 카테고리명, 게시물 제목, 게시물 내용, 게시물 내용과 관련된 단어, 방송 채널, 잡지명은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 3. 안전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D, C, A, B 위원 : 제척 사유 해당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은 안전번호 제2020-5322호~5437호로 게시물 수는 모두 655개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같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5322호~5331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동일한 웹하드 사이트에서 동일한 게시자가 영상(영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안전번호 제2020-5322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영화 ‘●●●●●: ●●●● ●● ●●●●’을 판매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0-5323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심의대상 게시물

에서 2015년에 개봉한 영화 ‘♣♣♣ ♣♣: ♣ ♣♣’을 판매하고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336호~5343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336호~5342호는 동일한 OSP이고, 제2020-5343호는 다른 OSP에 대한 사안임. 안건번호 제2020-5336호~5343호 중에는 헤비 업로더로 보이는 자가 게시한 심의대상 게시물이 있음.

(안건번호 제2020-5336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만화 ‘♠♣♠♣! (△△ : △△△△)’를 판매하고 있음. 게시물에는 “♣☐☐/♠♣/♣♣♣ ♠♣♠♣♣☐”, “♣♣ ♣♣♣♣ ♣♣♣ ♣♣♣ ♣♣♣ ♣♣♣ ♣♣♣”라 기재되어 있음. 복제·전송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복제물을 홍보하고 있음. 해당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면 jpg 형태로 이용 가능함. 해당 만화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음.

(안건번호 제2020-5337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서 2019년도 일본 만화 ‘△△ △△! (♠♣ : ◎♠♣)’를 판매하고 있음. 해당 만화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음. 해당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면 jpg 형태로 이용 가능함.

(안건번호 제2020-5343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만화 ‘⊕※ (♠♣ : ◎♠♣)’를 판매하고 있음. 해당 만화를 jpg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5322호~5331호, 제2020-5336호~5343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안건번호 제2020-5322호~5331호, 제2020-5336호~5343호는 영

화, 만화 저작물을 불법으로 공중송신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여야 함.

- D 위원 : 영리 목적의 웹하드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은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B 위원 :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공중의 이용에 불법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음.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정권고를 해야 함.

- C 위원 : 두 분의 의견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제2020-5322호~5331호, 제2020-5336호~534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332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카페 이용자가 웹툰 복제물을 스크랩하여 다시 게시한 사안임. 웹툰의 한 화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웹툰 '△♥♥ △△♥!'는 네이버 시리즈에서 대여는 쿠키 2개, 소장은 쿠키 3개로 구입하여 이용 가능함.

(안건번호 제2020-5332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카페는 상당한 규모의 국내 카페임.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해당 카페명으로 출처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URL에 접속하여 직접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카페회원만 읽기 가능하나 검색으로 게시물 확인은 가능한 것으로

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2020. 1. 16. 게시되었고, 조회 수는 512,015회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하단에는 댓글도 달려 있음.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하게 될 경우 게시물 단위로 시정권고가 집행되어 불법복제물이 제공되고 있는 본문뿐만 아니라 댓글도 함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됨.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을 수 있음. 댓글에는 “개웃격ㅌㅌㅌㅌㅌㅋㅋㅋ”, “재밋달ㅋㅋㅋㅋㅋ”, “다봤얼ㅋㅍㅍㅍㅍㅍ”, “이게 이런내용이었냐골ㅋㅋㅋㅋㅋ”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이 정도의 표현이라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을 하더라도 이용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위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참고로 지난 2019년 281회 전체위원회에서 최신 국내 개봉영화의 스크린샷 257장과 줄거리 등을 제공한 해당 카페의 다른 게시물을 심의한 바가 있음.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웹툰의 분량은 1화만 해당하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1화 전체 분량인 것으로 보임.
- B 위원 : 한 화의 분량이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양이 많아 보임. 네이버 웹툰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합법저작물의 1화와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웹툰의 분량을 비교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 (네이버 웹툰 사이트를 보여주면서)합법저작물인 웹툰 ‘△♥♥ △△♥!’는 총 23화까지 연재된 것으로 보임. 2020. 2. 6. 기

준으로 21화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1화의 첫 번째 화면과 마지막 화면으로 두 게시물을 비교해보면 첫 번째 화면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나 마지막 화면은 동일하지 않음.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음.

- A 위원 : 웹툰을 무료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사이트가 광고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임.
- 성원영 전문위원 : 네이버 시리즈에서 해당 웹툰이 22화는 4일 후 무료, 23화는 10일 후 무료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임.
- D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웹툰을 보고 다음 화를 보기 위해 합법 시장인 네이버 시리즈에 접속하여 합법저작물을 이용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
- B 위원 : 위원님 말씀에 동의함. 심의대상 게시물을 본 사람 중에는 해당 웹툰이 유료로 전환되더라도 합법적으로 웹툰을 볼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네이버 시리즈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므로 부결하는 것으로 수정 보고함.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저작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분량임. 해당 분량에 대해서 복제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20-533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작물은 무료로 게시 되는 웹툰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해 보임.
- B 위원 : 해당 안건은 무료로 보기가 가능한 일부 웹툰을 공유한 것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공정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보임. 합법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으므로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C 위원 : 해당 웹툰은 공개 저작물로 보여 부결함이 타당함.
- A 위원 : 같은 생각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533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 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333호, 5334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이 존재하는 밴드는 회원 수가 2020. 2. 3. 현재 3,474명임. 해당 밴드는 ♥♥♥ 자료제공, ♥♥♥ 장비 공동구매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설한 것으로 보임. 해당 밴드는 누구나 밴드를 검색해 찾을 수 있고, 게시물을 볼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각각 최신 영화인 '○○○', '○○○○○○ ○'를 MP4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민원 신고 내용을 보여주면서)민원 신고 내용에는 “♣♣♣♣ ♣♣ ♣  
♣ ♣♣♣♣ ♣♣♣ ♣♣♣♣ ♣♣♣♣”, “♣♣ ♣♣ ♣♣♣♣♣♣”라  
기재되어 있음.

우리 심의위원회는 밴드 내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밴드 개설 목적, 가입의 용이성 내지 폐쇄성, 회원  
수의 많고 적음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여부를 정하고 있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5333호, 5334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누구든지 해당 밴드를 검색하고 심의대상 게시물을 볼 수  
있으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있음.
- D 위원 : 밴드에 영화 불법복제물을 공유한 사안이므로 시정권고를  
해야 함.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들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위원 :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5333호, 5334호는 게  
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335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블로그 운영자가 휴대용 콘솔 게임기인 '●○◇ 

(안건번호 제2020-5335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좌측 상단에 위치해 있는 '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 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정보 등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는 불법적인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 이용 등의 행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행위 자체에 저작권의 침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실제로 어떤 게임이 재생되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음.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추가 예외』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0002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



- D 위원 : 소프트웨어를 패키지로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수익을 얻기 때문에 판매자에 대해 처벌을 하였지만 안전번호 제 2020-5335호의 경우에는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것으로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의문임.
- 성원영 전문위원 : 간접적으로 블로그 방문자 유입을 통한 광고 수익이 있을 것으로 보임.
- B 위원 : 커스텀 펌웨어를 설치하면 정품이랑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면, 미국법상 구글은 녹음을 못하게 하는데 CM이라는 그룹에서 커스텀 펌웨어를 만드는데 그것을 설치하면 녹음이 가능해짐. 이처럼 커스텀 펌웨어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는데 ●◎◇ ☒☒☒에 커스텀 펌웨어를 설치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 D 위원 : ●◎◇의 경우에는 정품만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커스텀 펌웨어를 설치하게 되면 온라인에서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게 됨.
- 성원영 전문위원 : (관련 기사를 보여주면서)‘●◎◇ ●◎◇ ●◎◇●◎◇◇...◇◇ ◇ ◇◇◇ ◇◇’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커스텀 펌웨어를 설치하게 되면 불법복제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됨.
- D 위원 : ●◎◇의 경우에는 기기보다 게임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더 상당함. 커스텀 펌웨어 설치를 통해 무료로 불법복제물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C 위원 : ●◎◇ ●◎◇가 게임 전용기기에 해당하는지? ●◎◇ ●◎◎◇가 게임 실행뿐만 아니라 웹 브라우징, 휴대용 기기가 가지는 부가적인 기능 등을 내포하고 있다면 게임 전용기기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함. 최소한 웹 브라우징이 가능하다면 게임 전용기기는 아니며, 펌웨어의 권리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펌웨어의 권리자에 대해서는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송권보다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 C 위원 : ●◎◇ ●◎◇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 예외에 해당하는 게임 전용기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먼저 판별해야 함. 게임 전용기기에 해당하더라도 펌웨어가 자기 것이 아니라면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를 보호해줘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임. 또한 오픈 소스에서 커스터마이징하여 홈브류 설치하여 접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왜 보호를 해야 하는지 의문임. 오픈 소스의 기술 보호 장치에 문제가 있어 쉽게 뚫리는 상태인 것을 다시 패칭해서 안전한 제품을 만든 것임.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로 보기에 회사의 책임도 있어 보임. 2018. 6. 이전에 생산된 ●◎◇ ●◎◎◇의 펌웨어는 하자가 있는 펌웨어로 보이므로 불완전한 기술적 보호조치임.
- B 위원 :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노력을 당사자가 했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보임.
- D 위원 :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노력을 상당히 했다고 볼 수 있음.

- C 위원 : 2018. 6. 이후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2018. 6. 이전에 생산된 ●○◇ ●○◇까지도 심의위원회가 보호를 해줘야 하는지 의문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위원회가 기술적 보호조치의 수준까지 고려하여 보호여부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해당 여부만 고려하면 될 것임.
- B 위원 : 전문위원이 보고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시 내용이 소비자와 권리자의 의견들을 중립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밟고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고시 자체를 기술적 보호조치의 직접적인 해석의 최종 지침으로 이해를 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음. 고시의 내용이 변화되는 객관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음. ●○◇ ●○◇ 커스텀 펌웨어를 하면 리눅스 설치, 게임 치트 사용, 롬 파일 적용, 한글패치 가능, 홈브류 구동, 에뮬레이터 구동 약 6가지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보임. 이 중 3가지 정도는 게임과 관련 없는 별도의 용도로 보임. 즉, 커스텀 펌웨어를 적용하는 것이 100% 게임만을 위해서라고 단언할 수 없음.
- D 위원 : 고시 내용에 있어서는 폭넓게 의견 수렴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커스텀 펌웨어를 설치한 ●○◇ ●○◇ 게임기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성도 있어 보임. 불법 다운로드한 게임(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 ●○◇ ●○◇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지? ●○◇ ●○◇가 웹

브라우저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영 전문위원 : ●◎◇ ●◎◇ 공식 홈페이지를 검색해보겠습니다.
- C 위원 : 마이크로프로세스가 펌웨어를 설치하면 게임 전용기기를 벗어나서 컴퓨터처럼 작동할 수 있게 만들었을 것이며, 원래 게임 전용 기기보다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 B 위원 : 전문위원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추가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검토의견을 낸 것으로 보임. 그 검토의견에 기준이 되는 고시의 내용이 기존의 휴대용 기기는 예외였는데 휴대용 기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면 고시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초점을 맞춰보면 불법 복제물의 재생 여부, 웹 브라우저 기능의 유무 문제를 떠나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접근통제를 건드린 것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고, 시정권고의 대상임.  
또한 최근 기사에서 보듯이 합법 프로그램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함.
- C 위원 : ('●◎◇●◎◇◎◇ ●◎◇●◎◇'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서)●◎◇로 유튜브를 볼 수 있는데 해당 기기가 게임 전용기기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처음에 ●◎◇ ●◎◇ 는 게임 전용기기로 나온 것입니다.

- C 위원 : 커스텀 펌웨어 하지 않은 정품 ●◎◇ ◇◇◇인데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것인지?
- B 위원 : 커스텀 펌웨어 하지 않은 정품 ●◎◇ ◇◇◇인데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 그렇다면 게임 전용기기로 보기 어려움. 게임 전용기기에서 탈피하기 위한 어떤 익스텐디드 버전의 ●◎◇ 기기가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서 기술적 보호의 허점이 있는 상태의 보안패치를 올려놓은 것임. ●◎◇ 사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해 패칭하였음.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심의안건에 대해 전체위원회 회부한다면 내용을 보완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음.
- C 위원 : 불법적 요소가 있는 서비스를 어딘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B 위원 :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롬 파일 소스가 공개되어 패치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 ●◎◇ 같은 경우는 롬 파일 소스를 공개하진 않을 것으로 보임. 롬 파일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함.
- C 위원 : 2018. 6. 이후에 생산된 게임기에 대해서는 커스텀 펌웨어가 되지 않도록 차단했음. 그 이전에 생산된 게임기에 대해서 보호한다는 것도 애매하다고 생각함. PACK을 쓸 수 있게끔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음.

- B 위원 : 에뮬레이터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일 수도 있음.
  
- D 위원 : 에뮬레이터는 게임기뿐만 아니라 PC로도 이용할 수 있음. 그 경우에 정품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게임기에서도 이용하고 PC로도 이용하는 것이라 게임사 입장에서는 손해될 것이 없음. ●◎◇ 사건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에뮬레이터는 공정 이용 영역으로 들어갈 여지가 충분히 있음.
  
- B 위원 : 게임 파일이랑 롬 파일이랑 두 개 다 결합이 되어야 게임이 실행되는데, 롬 파일은 커스텀 펌웨어를 한 것이고, 게임 파일은 커스텀 펌웨어된 롬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임. 두 개가 결합되기 전에 롬 파일 자체에 대해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로 100%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음.  
에뮬레이터도 에뮬레이터 된 원본 게임파일을 에뮬레이터와 결합하는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 과거에 에뮬레이터가 문제된 콘솔 게임 사례를 심의한 적이 있는데 해당 사안까지 보완해서 전체위원회에서 보고하겠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20-5335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 ●●● 기기를 이용한 커스텀 펌웨어 방법을 공유한 게시물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므로 전체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커스텀 펌웨어 자체가 기술적 및 법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인지 불명확하므로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 D 위원 : 해당 안건은 논의가 더 필요하므로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 C 위원 : 같은 생각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335호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5344호~5346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일본 애니메이션 ‘●●●●● ●●●●●● ●●●●●●, ●●●●●●● ●●●●●● ●●●●’, ‘●●●● ●● ●●●● ●●●●’, ‘●●●●●● ●●’의 대사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우리말로 번역하여 자막 파일만 블로그에 올린 사안임. ‘♫ ♫♫♫ ♫♫♫♫♫ ♫♫♫♫♫, ♫♫♫♫♫♫ ♫♫♫♫♫’는 2019. 10. 5.부터 2020. 2. 6 현재까지 일본 Tokyo MX과 애니플러스에서, ‘♫♫ ♫♫♫♫’는 2020. 1. 20.부터 2020. 2. 6 현재까지 일본 Tokyo MX에서 방영 중이며, ‘♫♫♫♫ ♫♫ ♫♫♫♫’은 2019. 10.부터 2020. 1. 18.까지 일본 Tokyo MX에서 방영 되었음. 자막 제작자는 일본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번역가, 자막을 만드는 제작자를 통칭하여 부름. 번역가가 자막을 제작할 가능성도 있지만 보통 팀으로 운영되어 자막 제작자와 번역가가 다를 수 있음. ‘b b’, ‘b b b b b’의 자막 제작자는 ‘ㄱㄱㄱ’, ‘ㄱㄱㄱ ㄱㄱㄱ ㄱㄱㄱ’의 자막 제작자는 ‘ㄱㄱㄱ’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게시자가 직접 번역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자막파일만으로 플레이어에서 재생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싱크된 시간과 자막을 볼 수 있게 텍스트 형태로 변경하였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5344호~5346호에 대한 의견 구함.
- D 위원 : 자막 파일만 제공한다면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아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됨. 영상과 자막파일을 쉽게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의도를 가지고 smi 또는 srt로 자막을 제작했을 수 있으므로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 B 위원 : 자막 파일의 확장자명이 어떻게 되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며) 자막 파일의 확장자명은 ass임.
- B 위원 : 자막 파일의 확장자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파일명으로 구글에서 검색하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구글 검색결과 화면을 보면서) 검색결과 화면에 심의대상 게시물과 동일한 파일명이 확인됨. 게시자가 직접 번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
- B 위원 : 검색결과 중 토렌트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막파일이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토렌트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여주면서)동일한 이름의 자막 파일이 있음.
- B 위원 : 해당 자막 파일이 게시자의 창작물은 아닌 것으로 생각됨.
- A 위원 :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C 위원 :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자료를 보완하여 전체위원회에서 다시 보고하겠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344호~5346는 자료 보완 후 세부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로 회부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5347호~5350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제2020-5347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5347호는 미국 드라마 ‘㉠㉠㉠ ㉠’이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음.  
(제2020-5348~5350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제2020-5348~5350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 ㉠㉠㉠’, ‘㉠㉠㉠㉠ ㉠㉠’, ‘㉠㉠㉠ ㉠㉠㉠ ㉠㉠㉠㉠㉠’ 등 네이버 블로그에 55건 게시되어 있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5347호~5350호에 대한 의견 구함.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물을 불법 업로드한 것으로 시정권

고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D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영리 목적의 전송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A 위원 : 시정권고하는 의견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347호~535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5368호~5370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네이버 블로그 운영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를 스트리밍 형식으로 32건이 업로드되어 있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5368호~5370호에 대한 의견 구함.
- C 위원 : 해당 게시물은 저작물을 불법 업로드한 것으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B 위원 : 정당한 관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

공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 필요성이 인정됨.

- D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A 위원 :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368호~5370호는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5379호~5381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가 '♠♠♠♠ ♠♠♠♠♠♠♠♠♠♠♠♠♠♠♠♠'를 운영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의 오프닝 음원을 MP3파일 형태로 제공함.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의 음원이 아마존에서 판매 중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5379호~538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해당 음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저작물인 점을 고려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있음.
- D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위원 : 시정권고 하는 의견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382호는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 하는 것을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5351호~5367호는 민원인이 불법복제물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와 ㄱㄱㄱㄱㄱㄱ ㄱㄱㄱ에 게시된 만화 불법복제물을 직접 채증하여 신고함. 제2020-5367호 조사 자료를 보시면 역자 'ㄱㄱ', 식자 'ㄱㄱ'로 표시되어 있어, 게시된 불법복제물이 번역자와 식작업자가 공동으로 작업한 것을 알 수 있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5351호~5367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 만화는 그림과 말풍선을 공동저작물로 보고 있음.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위원 : 해당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D 위원 : 시정권고 가결에 대한 의견에 동의함.
- A 위원 : 같은 생각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351호~536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5371호~5374호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공한 사안임. 2019년 민원신고 건의 후속조치로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5371호~5374호에 대한 의견 구함.
- D 위원 :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복제물로 시정 권고 필요성이 인정됨.
- C 위원 :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A 위원 : 시정권고 가결하는 것에 이의 없음.
- B 위원 :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371호~537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5375호~5378호는 민원인이 커뮤니티 사이트 내 만화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건임. '※※※※', '※※※ ※※', '※※※※ ※※※ ※'은

네이버 시리즈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은 인터넷 서점 및 e 북으로 구매할 수 있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5375호~5378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해당 만화는 시중에서 판매 증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의원님 의견에 동의함.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영리 목적의 전송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D 위원 : 해당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375호~537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5383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심의대상 게시물들을 보여주면서) ★★★★★ ★★ ★★ '※★★★★★★※ ★★ ★★★★★'가 유튜브에서 재생되는 뮤직비디오 등을 VOD(video on demand) 기능을 이

용하여 '★★★★ ★★' 이용자들에게 다시보기로 제공하고 있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5383호에 대한 의견 구함.
- B 위원 : ★★★★★ ★★ 화면에 유튜브 영상을 재생하여 보여주고 있음. 유튜브에 영화를 올릴 때도 네모 또는 세모창 안에서 재생되도록 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기술을 회피하기 위해 창 안에서 재생되도록 편집하여 게시함.  
심의대상 저작물을 데드 카피(Dead Copy)에는 영상 중간에 ♥♥ 목 소리가 포함되어 있음.
- B 위원 : 유튜브가 ♥♥♥♥♥♥♥♥♥♥에 음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게시된 음악 또는 뮤직비디오를 b b b b ♥♥에서 방송하면서 재생하여 보여주는데 b b b b ♥♥도 ♥♥♥♥♥♥♥♥♥♥에 음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음.  
음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 의견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유튜브에서 권리자가 Content ID로 소유권을 주장하면 수익 배분되고 b b b b ♥♥도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를 재생했을 때 수익 배분되지만 심의대상 게시물처럼 b b b b ♥♥ 방송화면에 유튜브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 방송하는 경우에 기술적으로 식별하여 수익 배분될 수 있는지 의문임.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데 b b b b ♥♥ 방송

으로 음원이나 뮤직비디오를 보여줄 경우 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됨.

b b b b ♥♥에서 유튜브에 게시된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를 재생하여 보여주는 경우에 시스템이 인식하여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지?

- B 위원 : 그렇지 않음.

- 성원영 전문위원 : 그렇기 때문에 가결의견으로 검토하였음.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부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는 ♥♥♥♥♥♥♥♥♥♥와 분쟁 중이지만 음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b b b b ♥♥에서 방송하면서 유튜브에 게시된 음악을 중복 재생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볼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들을 재생하면서) 해당 게시물을 재생해보면 장시간 동안 팝송, 가요 등이 방송되고 있으며, 음원 재생 중간에 광고도 삽입되어 있음.

- C 위원 : 저작권자와 b b b b ♥♥의 문제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함.

- B 위원 : 최종 플랫폼에서 사용료 보상에 대한 절차가 있다면 최종 이전 플랫폼에서의 사용료 보상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함.

- C 위원 : 방송사에서 방송할 때 이용허락 없이 불법으로 다른 저작물을 사용했다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

다고 생각함.

b b b b ♥♥가 최종 플랫폼이고 플랫폼 사업자가 어떤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b b b b ♥♥의 문제이므로 심의위원회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님.

- D 위원 : 예를 들어 공중파에서 방송한 프로그램 중 일부를 케이블 tv에서 사용할 때 케이블 tv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면 문제소지가 없음.
- C 위원 : 케이블tv가 프로그램 중 일부에 대한 내용을 불법으로 사용했든 합법으로 사용했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관여할 이유가 없음.
- 성원영 전문위원 : b b b b ♥♥에서 채널을 운영하는 복제·전송자가 음원파일이나 b b b b ♥♥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음질이 좋지 않은 방송화면에 유튜브 재생화면을 보여주는 것은 수익 배분이 안 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함.
- D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보호원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A 위원 :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며,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38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5399호~5437호는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영화 '시동'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5399호는 2019. 12. 18.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 웹하드에서 20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2. 5. 기준 상영 중임. 참고로 해당 영화는 2020. 1. 16.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5410호는 2019. 12. 26.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 웹하드에서 195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2. 5. 기준 상영 중임. 참고로 해당 영화는 2020. 1. 28. 극장동시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만화 '호시노, 눈을 감아 (출판 : 학산문화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5411호는 ◇◇◇ 웹하드에서 '호시노, 눈을 감아 1~34화, 번외 포함' zip 파일을 3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어문 저작물은 2019. 11. 12. 출간되었으며 총 9권으로 미완결임. 정품 구매시 권당 약 3,000원임.

(음악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 (가수: 우디(Woody))'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5429호의 음원파일은 2020. 1. 11. 발매된 곡으로 앨범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에 수록되어 있음. 작곡가 우디, 작사가도 우디임. ◇◇◇ 웹하드에서 2020. 1. 11. 신곡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33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고, 판매자명이 '◇◇◇◇◇'임.

(음악 '안녕, 내사랑 (가수: 프린(Prin))'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5437호의 음원파일은 2020. 1. 5. 발매된 곡으로 앨범 "오늘도 사랑하세요 OST Part 1"에 수록되어 있음. ◇◇◇◇◇ 웹하

드에서 2020. 1. 5. 신곡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24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고, 판매자명이 '◇◇◇◇◇'임.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335호, 5344호~5346호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고, 안전번호 제2020-5332호, 538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0-5322호~5331호, 5336호~5343호, 5333호, 5334호, 5347호~5350호, 5368호~5370호, 5379호~5382호, 5351호~5367호, 5371호~5374호, 5375호~5378호, 5384호~5437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34쪽부터 45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257호, 259호, 269호, 277호, 280호, 284호~287호, 293호~295호, 297호~303호, 315호, 319호, 325호, 328호, 333호~335호, 362호, 381호, 394호~397호, 410호~411호, 417호, 422호~423호, 427호~429호, 431호, 443호의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9개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되,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33개 안

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4개(부결사유 중복 4건)는 부결함.”

○ 제3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제3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46쪽부터 49쪽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13호~596호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이 제1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2. 13.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최현용